

③「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80人 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診療科目이 적어도 一般內科, 一般外科, 小兒科·産婦人科·放射線科·麻醉科·病理科·健康管理科 및 齒科가 設置되어 있고 各科마다 必要한 專門醫를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④「病院」·「齒科病院」또는 「漢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各各 그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 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齒科病院의 境遇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⑤「醫院」·「齒科醫院」또는 「漢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各各 그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⑥「助産所」라 함은 助産院이 助産과 妊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을 行하는 곳으로서, 助産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第4條 (醫療審査委員會) ①保健社會部長官이 附設하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醫療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調査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 所屬下에 醫療審査委員會(以下「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醫療인이 行하는 醫療·助産·看護 등 醫療技術의 施行 (以下「醫療行爲」라 한다)의 範圍
2. 醫療人 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3. 其他 醫療에 관한 專門의이고 技術的인 事項

②審査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과 審査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章 醫療人

【第一節 資格과 免許】

第5條 (醫師·齒科醫師 및 漢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該當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醫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2. 漢方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漢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3.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 또는 第2號의 學校를 卒業하고 醫學士·齒科醫學士 또

는 漢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4.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

第6條 (助産員의 免許) 助産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看護員의 免許를 가지고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에서 1年間 助産의 修習課程을 마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産員의 免許를 받은 者.

第7條 (看護員의 免許) 看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看護員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專門學校 또는 看護學校를 卒業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의 學校를 卒業하거나 看護員의 免許를 받은 者.

第8條 (缺格事由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醫療人이 될 수 없다.

1. 精神病者·心身薄弱者
2. 聾者·啞者·盲者
3. 醫療人으로서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不具 廢疾者와 麻藥 其他 有毒物質의 中毒者
4.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②禁錮以上の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여 起訴中에 있는 者가 國家試驗에 合格한 때에는 그 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免許를 留保한다.

第9條 (國家試驗) ①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看護員의 國家試驗은 每年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②第1項의 國家試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 (應試資格의 制限 등) ①第8條 第1項 各號의 當하는 者 또는 禁錮以上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여 起訴中에 있는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②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受驗을 停止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効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効로 된 者는 그 後 2회에 限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第11條 (免許의 條件 및 登錄)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5條 乃至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에 있어서 2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特定地域 또는 特定業務에 従事할 것을 免許의 條件으로 붙일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5條 乃至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할 때에는 그 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臺帳에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登錄臺帳은 醫療人의 種別에 따라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④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節 權利와 義務】

第12條 (醫療技術에 대한 保護) 醫療人의 醫療行爲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지 못한다.

第13條 (醫療器材의 押留禁止) 醫療人의 醫療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材料는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第14條 (器具등의 優先供給) ①醫療人은 醫療行爲를 위하여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에 대하여 優先적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第1項의 權利에 附隨되는 物品·勞力과 交通手段에 대하여도 第1項과 同一한 權利를 保有한다.

第15條 (營業稅免除) 醫療人의 醫療業에 대하여는 營業稅를 免除한다.

第16條 (診療의 拒否禁止등) ①醫療人은 診療 또는 助産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醫療人은 救急患者의 應急處置를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即時 施行하여야 한다.

第17條 (摘出物등의 處理) 醫療人은 醫療行爲에 따라 身體로부터 摘出되거나 切斷된 死胎兒·臟器 其他 모든 物體를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第18條 (診斷書등) ①醫療業에 従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아니면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を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診療中이던 患者가 最終診療時로부터 24時間 以內에 死亡한 境遇에는 다시 診察하지 아니 하더라도 診斷書 또는 證明書を 交付할 수 있다.

②醫療業에 従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漢醫師 또는 助産員이 아니면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

를 交付하지 못한다.

③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는 그가 診察 또는 檢案한 것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④醫師·漢醫師 또는 助産員은 그가 助産한 것에 대한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의 交付要求를 받은 때에도 第3項과 같다.

第19條 (秘密漏泄의 禁止) 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醫療·助産 또는 看護에 있어서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第20條 (記錄 閱覽등) ①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患者에 關한 記錄을 閱覽시키거나 그 記錄의 內容探知에 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同一한 患者의 診療上의 必要에 의하여 다른 醫療機關에서 그 記錄의 閱覽을 要求할 境遇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醫療人은 應急患者를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때에는 患者移送과 同時에 初診記錄을 送付하여야 한다.

第21條 (診療記錄簿등) ①醫療人은 各各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또는 看護記錄簿를 備置하여 그 醫療行爲에 關한 事項과 所見을 詳細히 記錄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또는 看護記錄簿는 적어도 10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第22條 (療養方法의 指導) 醫療人은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 대하여 療養의 方法 其他 健康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指導하여야 한다.

第23條 (申告) ①醫療人은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그 實態와 就業狀況등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醫療人이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死亡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事實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相續人이 없을 때에는 該當醫療關係團體의 長이 이를 代行하여야 한다.

【第3節 醫療行爲의 制限】

第24條 (無免許醫療業行爲등 禁止) ①醫療人이 아니면 누구든지 醫療行爲를 할 수 없으며 醫療人도 免許된 以外의 醫療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範圍 안에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1. 外國의 醫療人의 免許를 所持한 者로서 一定한 期間 國內에 滯留하는 者.

2. 醫學·齒科醫學·漢方醫學 또는 看護學을 專攻하는 學校의 學生.

② 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産員 또는 看護員의 名稱이나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4節 醫療人團體】

第25條 (中央會)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産員 및 看護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全國의 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漢醫師會·助産員會 및 看護員會(以下「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 中央會의 會員이 된다.

④ 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6條 (設立許可등)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中央會의 定款에 記載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中央會의 支部) ①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와 道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區·市·郡에 分會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그 以外의 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 또는 分會의 責任者는 遲滯없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以下「道知事」라 한다) 또는 區廳長·市長·郡守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 (協助의 義務) ① 中央會는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關한 協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補修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29條 (監督)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 또는 그 支部가 定款으로 定한 事業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國民保健向上에 障礙가 되는 行爲를 할 때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 要請에 不應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第3章 醫療機關

【第1條 醫療機關의 開設】

第30條 (開設) ① 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 하고는 醫療業을 行할 수 없다.

②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産員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産所를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以下「醫療法人」이라 한다)이 아니면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을 開設할 수 없다.

③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産員이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産所를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醫療法人이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1.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別 所要病床數를 超過하는 境遇

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月以內에 그 處分을 받은 者가 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境遇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 그 開設에 關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3項 또는 第4項과 같다.

⑥ 助産所를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

第31條 (醫療機關의 開設特例) ① 第30條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者 以外의 者가 그 所屬 職員·從業員 其他 構成員(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家族가 健康管理을 위하여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管轄하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에 關한 節次·條件 其他 必要한 事項과 그 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2條 (施設基準등)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施設基準·規格·醫療人의 定員 其他 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3條 (休業·廢業의 申告)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醫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4條 (宿直醫療人) 各種 病院에는 應急患者와 入院患者의 診療上 必要한 宿直醫療人을 두어야 한다.

第35條 (醫療機關의 名稱) ①醫療機關은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名稱以外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綜合病院의 名稱表示는 病院으로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의 名稱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 따로 定할 수 있다.

②醫療機關의 名稱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③醫療機關이 아니면 醫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6條 (診療科目의 表示) 醫療機關의 診療科目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第37條 (療醫報酬) 醫療機關이 患者등으로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關하여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8條 (國·公立醫療機關의 特例)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特別한 規定을 할 수 있다.

第39條 (研究所등) ①醫療에 關한 研究所 또는 이와 類似한 機關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所 또는 이와 類似한 機關의 範圍와 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40條 (管理醫師)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醫療人이 아닐 境遇에는 그 醫療機關의 主된 醫療業務를 行할 수 있는 醫療人으로 하여금 그 醫療機關을 管理하게 하여야 한다.

【第2節 醫療法人】

第41條 (設立許可등) ①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書類를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 保有하여야 한다.

③醫療法人은 그 財産을 處分하거나 定款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42條 (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의 養成 또는 補修教育의 實施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査研究

第43條 (實績報告) 醫療法人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以內에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運營實績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고 그 副本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44條 (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한 때.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 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4. 保健社會部長官이 監督上 發한 命令을 違反한 때.

第4章 醫療廣告

第46條 (誇大廣告 등의 禁止) ①醫療法人,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醫療業務에 關하여 虛偽 또는 誇大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②醫療法人,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特定醫療기관이나 特定 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방법이나 經歷 또는 藥効등에 關하여 大衆廣告·暗示의 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④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범위 其他 醫療廣告에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47條 (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 以外의 目的으로 豫防醫學의·臨床醫學의·研究結果機能, 藥効, 診療 또는 助産方法 등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第5章 監 督

第48條 (指導와 命令) 保健社會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

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위
해가 發生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와 명
령을 할 수 있다.

第49條 (報告와 業務檢査等)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
知事は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
를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業務狀況 施設
또는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等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事實을 確認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에 관한 사항은 保健社
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0條 (是正命令等)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醫療기관이 第31條 第2項, 第32條, 第34條 내지 第
35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一定한 期
間을 정하여 그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使用을 戒
한 또는 禁止하거나 위배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第51條 (開設許可의 取消等)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
知事は 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醫療業을 정지하거나, 그 開設許可를 취소하거나
그 醫療機關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醫療機關
의 폐쇄는 第30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한 醫
療機關에 限하며 이를 할 수 있다.

1. 開設申告 또는 開設許可를 한날로부터 3月 이내
에 正當한 사유없이 그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한 事實이 있
을 때.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業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第48條 또는 第50條의 規定
에 의한 명령에 위배한 때.
4. 醫療法人이 그 設立許可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第30條 第5項, 第33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위
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에는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못한다.

第52條 (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第8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된
때.
2. 금고 이상의 刑을 받을 때.

3.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期間中에 醫
療行爲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5. 면허증을 貸與한 때.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者라 할지라도 그 取消의 原因이 된 事由가 소
멸하거나 개준의 情이 현저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면허를 再交付할 수 있다.

第53條 (資格停止等)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人의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면허 자격을 停止시킬 수 있
다.

1. 醫療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손상시키는 行爲를
한 때.

2.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繼續하여 3
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行爲의 범위는 大統
領令으로 定한다.

③醫療, 齒科醫院, 漢醫院 또는 助産所의 開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의기관의 醫療業을 할
수 없다.

第54條 (醫療監視員) ①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
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와 서
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에 醫療監視員을 둔다.

②醫療監視員은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그 所
屬公務員中에서 任命하되 그 資格任命等에 關하여 必
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③醫療監視員 및 其他 公務員은 그 職務上 知得한 醫
療機關, 醫療人 또는 患者의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第6章 補 則

第55條 (專門醫) ①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
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醫의 資格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 標榜하지 못한다.

③專門醫의 專門科目 資格認定 資格證의 交付 및 專
門科目 標榜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
으로 定한다.

第56條 (分野別看護員) ①保健社會部長官은 看護員에
對하여 看護員의 免許以外에 業務分野別 資格을 認定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業務分野別資格基準, 資格證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7條 (看護補助員) ①看護補助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看護補助員은 第2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看護補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

③간호보조원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限界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8條 (限地醫療人) ①第2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限地醫, 또는 限齒醫, 限漢醫 (以下「限地醫療人」이라 한다)는 그 許可 받은 地域안에서 該當醫療業務를 할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限地醫療人이 그 허가받은 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取消할 수 있다.

③限地醫療人의 허가지역의 變更,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9條 (醫療類似業者) 第2條4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認定받은 接骨士, 鍼士 또는 灸士 (以下「醫療類似業者」라 한다)는 그 施術行爲를 業으로 할 수 있다.

②醫療類似業者의 施術行爲, 施術業務의 限界 및 施術所의 基準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60條 (準用規定) 이 法中 醫療人과 醫療機關에 關한 規定은 看護補助員·限地醫療人 및 醫療類似業者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限地醫療人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限地醫療人」으로, 看護補助員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看護補助員」으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하며, 醫療類似業者에 있어서는 「醫療人」은 「醫療類似業者」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으로 「醫療機關」은 「施術所」로 한다.

第61條 (醫療囑託)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管轄區域안 에 住所를 가진 醫療人에게 保健醫療業務를 囑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囑託을 받은 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絕하지 못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人에게 醫療囑託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하는 報酬 및 旅費를 그 醫療人에게 支給 하여야 한다.

第62條 (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안마사는 第2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안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안마사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限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으로 定한다.

第63條 (經費補助等)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의 事業이 國民保健向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醫療人醫療機關이나 醫療關係 團體에 對하여 醫療에 關한 調查研究 또는 事務를 委囑한 때에는 이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64條 (權限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65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章 罰 則

第6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百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면허증을 貸與한 者.

2. 醫療機關의 醫療用施設, 器材, 藥品, 其他의 器物을 破壞損傷하거나 診療를 妨害할 目的으로 醫療機關을 占據한 者, 또는 이를 教唆幫助한 者.

3. 第17條, 第18條 第1項, 第2項, 第24條 第1項, 第30條 第1項, 第2項 또는 第51條 第2項, 第50條 또는 第51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67條 (同前) 第16條, 第19條, 第20條 第1項 本文, 第19條 第1項 또는 第54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9條, 第20條 第1項 本文 또는 第54條 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對하여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68條 (同前) 第18條 第3項 또는 第4項 第21條, 第24條 2項, 第30條 5項(다만 許可의 境遇에 限한다)第35條 第1項 또는 第3項, 第41條 第3項 第4項, 第46條, 第47條, 第49條 第1項, 第55條 第2項 또는 第62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69條 (同前) 第20條 第2項, 第23條 第2項, 第30條 第3項 또는 第5項 (다만 申告의 境遇에 限한다.)第33條, 第34條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7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

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第66條 내지 第6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醫師·齒醫師·漢醫師·助產員·看護員 또는 看護補助員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專門醫나 안마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한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更新하여야 한다.

이 期間이 經過한 후에는 從前의 免許證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看護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在學중인 者는 第7條 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後 5年이내에 限하여 간호원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第4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依하여 開設된 醫院·齒科醫院·漢醫院 또는 助産所는 이 法에 依하여 開設된 것으로 본 다第.

第5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開設된 綜合病院·病院·齒科醫院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醫療機關(國公立醫療機關은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이 法의 節次에 따라 醫療法人의 設立,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6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醫師會, 醫科醫師會, 漢醫師會, 助産員會, 看護員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7條 (同前)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限地醫療人과 第59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類似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그 면허증 또는 資格證을 更新하여야 한다. 이 期間이 經過한 후에는 從前의 면허증 또는 資格證은 이를 使用하지 못한다.

第8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公醫로 委囑된 者는 第61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囑託을 받은 것으로 본다.

齒 協 會 誌 寄 稿 案 內

投 稿 要 領

- ① 原稿 曆勘日字 ; 每月 10日
- ② 보 낼 곳 ; 本 協會誌 刊行室
(서울 中區 仁峴洞 1街 31의 8號
現代醫學社內 (26) 8398. 2257
- ③ 掲載料 內容
平 版 ; 頁當 1,400원
表英文版 ; 頁當 1,600원
圖 案 ; 枚當 350원
銅 版 ; 坪當 13원
(普通 寫眞1枚가 42坪임)
別 冊 ; 部 當 40원
(100部 未滿은 50원)

印 刷 ; 臺當 2,500원

寫眞附圖 1面 12,000원

其他 特殊印刷 및 特殊組版을 要할 시는 그 察費를 寄稿者가 負擔함.

④ 掲載順序 및 月號는 學術委員會에서 決定함.

⑤ 寄稿時는 아래 事項을 明示바람.

(가) 別冊所要 日字

(나) 別冊部數

(다) 組版 및 印刷上 特히 注意를 要하는 事項.

※ 其他 學會誌 및 一般印刷 問議는

現代醫學社로 (26) 8398